

[붙임]

지 방 교 육 행 정 기 관 및 공 립 의 각 급 학 교 에
두 는 국 가 공 무 원 의 정 원 에 관 한 규 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20%의 시·도별 정원 증감규모를 3분의 1로 확대하여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지역 간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 추가배정이 가능한 정원의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0.1%에서 1%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7. 00 ~ 0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부령 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을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으로 한다.

별표 1부터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분	배정 기준
1. 원장 및 원감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增員)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단설유치원이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減員) 배정
2. 교사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유아 수 구간 구분에 따른 공립유치원별 교사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sum(\text{유아 수 구간}^* \text{에 속하는 공립유치원별 교사 수}^{**} \times \text{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유치원 총 수})$ (※ 교육통계연보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병설유치원은 별개의 공립유치원으로 본다.

* 유아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유아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유치원을 분류한 것

**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유치원별 교사 수 = 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유치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유아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유치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공립유치원 신·증설 실적, 전년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한 교사 수, 과밀학급 해소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별표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새로운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sum(\text{학생 수 구간}^* \text{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times \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초등학교 총 수})$ (※ 교육통계연보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 $\frac{\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별표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구분	배정 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새로운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sum(\text{학생 수 구간}^* \text{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times \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중등학교 총 수})$ (※ 교육통계연보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교사 정원은 시·도 수요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 $\frac{\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정원효율화 실적이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미달하는 경우, 제2호가목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별표 4]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	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증설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특수교사 정원 =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대상 총 학생 수/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제2호다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Σ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특수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단, 정원이 증가한 교육청이 정원이 감소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은 경우에 한한다.),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별표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1. 보건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급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보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 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시·도별 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

* 시·도별 필요정원=(시·도별 공립학교 수 + 학급 수가 43개 이상인 학교 수 + 설치·폐지·통합된 학교 수) - 전년도 정원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폐지·통합된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sum$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보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보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2. 영양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도별 학교 급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영양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 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시·도별 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

* 시·도별 필요정원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 설치·폐지·통합된 급식 학교 수 +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수) -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 + 전년도 영양사 수)

※ 필요정원 계산 시 ‘설치·폐지·통합된 급식 학교 수’ 외의 항목은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중 6학급 이하의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sum$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영양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영양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급식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사서교사의 배정 기준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시·도별 학교도서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 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 \right)$$

* 시·도별 필요정원 =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 - (전년도 사서교사 정원+전년도 사서 수)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sum$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사서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사서교사 수, 학교 규모 및 학교도서관 여건을 반영한 정원 배정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4.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정 기준

- 가.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 수와 그 이하인 학교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 나.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다.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순회 담당 학교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 라. 전문상담순회교사 총 정원의 100분의 1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

비고

1. 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 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 \right)$$

* 시·도별 필요정원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수 +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 수) - (전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사 수)

※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필요정원을 0.5명으로 환산하고,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는 1명을 배치한다.

※ 감원규모가 퇴직자보다 많은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sum$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학교 신·증설,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인원, 학교규모를 반영한 정원배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전문상담교사 수(정원이 감소한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전문상담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전문상담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3. 다목에 따라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 시·도별 정원} = \text{전년도 정원} + \left(\text{총증감규모} \times \frac{\text{필요정원}^*}{\sum \text{시·도별 필요정원}} \right)$$

* 시·도별 필요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 - 전년도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 순회 담당 학교 수 구분에 따른 정원은 관할하고 있는 학교 수가 29개 이하인 경우 2명, 30개 이상 39개 이하인 경우 3명, 40개 이상 49개 이하인 경우 4명, 50개 이상인 경우 5명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라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blacksquare \text{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 = [\text{잔여정원} \times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sum \text{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